

순창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정 2018. 3. 21.

개정 2023. 6. 20.

제1조(목적) 본회는 순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지) 본회는 순창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, 소재지는 순창초등학교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2.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회원) 회원은 순창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.

제5조(구성) 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 모임 (녹색어머니 등)을 둔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본 회에는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감사1인, 총무 1인의 임원을 둔다.

- ②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각각 선출한다. 단,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 회장 입후보자 중에서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.
- ③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⑤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회장의 직무는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결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회장까지 결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⑨ 총무는 본 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)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5인~7인으로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학부모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
2. 선출홍보 및 공고에 관한 접수.확인.발송에 관한 사무
3.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
4.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
5.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
6.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
7. 당선자 공고, 통보에 관한 사무 등

제8조(총회)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10%이상 참석시 개최한다. 다만,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 안건에 대하여 (가정통신문 회신)으로 사전투표하여 회신하며, 사전투표로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이 회의 목적을 감사에게 서면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공지 후 10%이상 동의 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2. 학부모 교육 사업계획 수립
3.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대의원회) ① 본 회의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
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급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.

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
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0조(학급학부모회)** ① 학급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, 학급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.
- ② 학급학부모회에서는 학급학생들의 학교생활, 학년운영,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.
- ③ 학급학부모회 대표나 학급학부모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.
- ④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.

제11조(기능별 학부모모임) ①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② 기능별 학부모모임(녹색어머니 등) 임원은 학부모회 임원이 겸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정)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해산) ①본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.

②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.

제15조(청산)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